

의안 번호	519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

## 검 토 보 고 서

운 영 위 원 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21.

전문위원 신정경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권영애의원외 11명
- 나. 의안번호 : 제519호
- 다. 제출일자 : 2025.9.25.
- 라. 회부일자 : 2025.10.14.

#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 및 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표창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성북구의회 및 성북구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적이 있어 표창 등을 수여시,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음(안 제8조)
- 다. 표창의 취소(안 제1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조치
- 다. 사전협의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: 2025. 9. 30. ~ 2025. 10. 4.(의견없음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

- 포상제외자 : 부적절한 자(성범죄, 음주운전 등)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 규정 마련
- 포상 취소 및 환수 :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

### 나.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

개정 조항	주요 내용	상세 검토	비고
제2조 (표창대상)	표창 대상을 구민, 학생, 외국인, 단체 및 기관, 의회 및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화.		공무원을 표창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 표창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
제8조 (표창의 방법 및 부상)	제2조제1항제5호(공무원)에게 표창 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구체화	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 및 부상 수여 근거를 명확히 함.	
제15조 (표창의 취소) (신설)	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.	현행 조례에 없던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, 취소 사유에 성범죄 · 음주운전	

	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. 성범죄,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	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명시하였음	
	②표창 취소 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·감사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	취소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되, 상장·감사장의 취소에 대한 심사 생략은 신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.	
	③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,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또는 상패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		부상 등의 환수를 의무화하여 포상 취소 및 환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고 소극 행정을 방지함.

#### 다. 종합의견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. 특히, 현행 조례상 미비했던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및 부상 등의 환수 규정(제15조)을 신설하고 이를 의무화('취소하여야 한다', '환수하여야 한다')함으로써, 포상 제도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할 것으로 판단됨.

주요 개선 효과로 성범죄,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표창이 명예롭고 가치 있게 유지될 수 있음. 또한 포상 취소와 부상 환수를 재량이 아닌 의무(취소/환수하여야 한다)로 규정하여 소극 행정 유발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사료됨.

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